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61
----------	-------

발의연월일 : 2026. 4. 15.

찬성자 : 이수진 · 임미애 · 서미화
박희승 · 전진숙 · 서영석
이개호 · 송옥주 · 장종태
전종덕 · 김 윤 · 남인순
김문수 · 김남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 지원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① 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품의 접수·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9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①</u> <u>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u> <u>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u> <u>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u> <u>1항제7호에 따라 공단이 운영</u> <u>하는 병원의 업무를 수행하기</u> <u>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u> <u>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u> <u>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u> <u>여야 한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u> <u>사항 외에 기부금품의 접수·</u> <u>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u> <u>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u> <u>한다.</u></p>